

창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610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엄도홍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7.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10963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2018. 5. 22.자 채권양도양수계약

내지는 같은 날 체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374,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98,1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 판결 2쪽 밑에서 5행 “기재되어 있었다”를 “잔금지급일 무렵인 2016. 3. 8.자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5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 판결 3쪽 밑에서 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바꾼다.○ 제1심 판결 4쪽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을가 제3호증과 을나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비교해 보면, 소외 회사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는 먹지를 낸 양식을 이용하여 3부 작성된 후 중개인과 소외 회사 및 C이 각 1부씩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위 특약사항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 3부에 모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1심 판결 5쪽 1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4) 이 사건 점포의 매수인이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G는 매매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 받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심 공동피고였던 G는 1심에서 피고를 공동임차인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도 있다).

○ 제1심 판결 5쪽 14행의 “당시인 2016. 1. 30.”를 “잔금지급일 무렵인 2016. 3. 8.경”으로 고치며, 16행의 “계약서는” 바로 뒤에 “기존의 채권양도로 인한 권리의무관계를 반영하여”를 추가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C을 대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61,298,130원을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C이 피고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2016. 3. 8.경 임대인의 동의하에 C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양도된 사실은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단지 C의 대리인으로서 C이 수령할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대신 수령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C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정,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